

[시장조사 현안레포트 99-1]

‘99년 세계의 무역장벽

- 전망과 대책 -

1999. 1

대 한 무 역 투 자 진 흥 공 사

[목 차]

I. 우리나라의 수출여건과 수입규제 전망	1
1. '99년 우리나라의 수출여건	1
2. 세계각국의 수입규제 전망과 근거	4
가. 미국	4
나. E U	9
다. 일본	13
라. 중국	15
마. 대만	18
바. 동남아	21
사. 중남미	24
II. 최근 세계각국의 수입규제 특징 및 형태	29
1. WTO 무역분쟁사례로 본 각국의 수입규제	29
2. 반덤핑 규제조치 확산	34
3. 각종 표준 및 기술규격	37
4.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조치	47
III.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대책	55
1. 정부의 대책	55
2. KOTRA의 대책	58
3. 기업의 대책	58
<부록 1> 주요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61
<부록 2> 멕시코의 주요품목별 관세인상 내역	71

< 요약 >

- 아시아 각국의 경쟁적인 수출공세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이 강화되고, 개도국들도 경제난 타개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철강, 석유화학, 섬유류, 조선 등 우리나라 주종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점증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수입규제조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수출목표 달성의 관건
- 주요국별 '99년 수입규제 전망과 근거
- <미국>은 경제성장을 둔화, 무역수지적자폭 확대, 2000년 대통령 선거 대비 등의 이유로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수출품종에는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대기업간 사업교환(Big Deal)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규제조치 가능성도 높음.
- <EU>는 경제성장을 둔화, 유로화 강세로 인한 유럽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 아시아 제품의 수입 급증 등으로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및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규제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자동차와 조선 부문의 규제조치도 강화될 전망
- <일본>의 경우, 새로운 수입규제 도입 가능성은 낮으나,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수산물과 식품, 구두 및 피혁제품, 섬유류 등에 대한 기존의 규제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GSP 공여품목 축소 및 공여 중단 가능성 등으로 대일수출에 어려움 가중 예상
- <중국>도 경제성장을 둔화, 수출증가율 둔화, 국내의 공급과잉 상태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중국내 시장이 과잉공급상태에 있거나 고부가가치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사진필름, 베니어합판 등에 대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대만>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적자 시정을 위해 통상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철강을 비롯하여 PVC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과 방직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동남아>는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기 어렵고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율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 및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규제대상 품목은 철강, 화학제품, 섬유 및 의류 등임.
- <중남미>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긴축정책으로 수입수요가 줄어들고 브라질 주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 여파로 외환.금융 위기 재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산에 대한 규제조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각국의 수입규제조치 특성

- WTO 출범이후 세계각국간 통상마찰과 무역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무역.통상마찰의 대상은 단순히 제품의 수출입 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술규격, 특허권보호, 판매 및 유통단계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장벽의 유형 또한 종래의 관세 분야에서 위생 및 검역, 차별적인 과세조치, 기술규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서비스 등의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 특히, 최근들어서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덤핑조치를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선진국 이외에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개도국들의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전세계적으로 각종 표준 및 기술규격 적용을 통한 기술장벽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WTO의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통보문이 매년 증가하고 기술장벽과 관련된 무역 분쟁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입증되고 있음.

. 미국의 UL, EU의 CE마크 및 E(e)마크 등과 같은 규격인증 마크는 중소기업체에 커다란 비용부담 초래

. WTO/ TBT 통보문중 개도국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98년 기준)하는 등 개도국의 기술장벽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

- 이밖에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각종 규제조치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에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EU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및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제도 등 다양한 환경장벽 도입

○ 이처럼 점차 거세지는 세계각국의 무역장벽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자구노력도 시급한 실정임.

- 정부는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해당국과의 양자간 협의 및 상설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수입규제를 예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필요시에는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부당한 무역장벽을 철폐 시키려는 노력 필요

- KOTRA는 해외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업계에 조기 전파하여 대비토록 하고 반덤핑 조사질의서 작성 등 중소기업들의 사후 대응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강화 필요

- 민간기업들도 해외기업과의 산업내협력을 강화하고 틈새품목/ 시장 발굴로 수출상품/시장 편중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의 수입규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외시장에서의 반덤핑 규제 움직임에 대비하여 수출과당경쟁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방지를 위한 국내기업간 협의기구 활성화 등의 조치 필요

I. 우리나라의 수출여건과 수입규제 전망

1. '99년 우리나라의 수출여건

가. 긍정적 요인

- 대내적으로는 '98년중 취해진 무역금융, 신용보증, 수출보험 등 외환·금융분야의 정책지원 효과가 '99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며, 금융구조조정 진전으로 신용경색이 상당부분 완화되고 금리의 하향 안정세로 수출기업의 경영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고용조정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제조비용상의 불리한 여건이 상당부분 극복되면서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금리인하 공조체제가 유지되면서 소비 및 투자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선진국으로의 수출호조가 지속될 전망
 - 특히,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서유럽은 2%를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시장단일화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로 유리한 진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진했던 동남아 경제는 '99년에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산업 재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도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WORLD BANK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5개국(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평균 GDP 성장률은 '98년의 -8%에서 '99년에는 0.1%로 개선될 전망

- 아시아 지역 경제회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조조정으로 '98년의 -2%대 성장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0.2-0.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나. 부정적 요인

-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경쟁적인 수출공세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이 강화되고, 개도국들도 경제난 타개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종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과 수입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우리나라 최대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98년의 3-3.5 % 수준에서 '99년에는 1.5-2.5%대로 둔화되고, 특히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99년에 약 3,000억불 규모에 달할 전망이어서 수입규제 등에 의한 수입시장 위축이 예견되고 있음.
 - WEFA는 미국의 수입증가율이 '98년의 5.3%에서 '99년에는 4.9%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
- 멕시코,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 중남미에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하에서 통화 평가절하 가능성 및 긴축정책으로 수입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는 '99년에 1% 이하의 경제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 주요국이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99년 1월 브라질 주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중남미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고조

○ 중국도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외국인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엔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러시아도 경제안정 국면을 되찾기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산업고도화 및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맹주를 지향하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위엔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나, 홍콩의 금융시장 불안, 아시아의 경기회복 지연, 일본 엔화가치 대폭 하락 등과 같은 외부적인 변수 발생시에는 평가절하 가능성도 있음.

○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99년도 수출은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하는 선에 머무를 전망

- 국내 주요기관들은 0.4- 2.0%의 수출증가율 전망
· 산업자원부는 전년보다 0.6% 증가한 1,340억불을 수출목표로 설정

- 세계 주요 예측기관들은 우리나라의 '99년도 수출증가율을 최저 - 4.4%(DRI)에서 최고 5.0%(WEFA) 까지 전망

○ 다만, 점증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수입규제조치가 금년도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수출목표 달성의 관건

- IMF에서는 금년도 세계경제를 위협할 복병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 팽배를 지적하였으며, 월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부장관도 '98년이 "국제금융위기의 해"라면 '99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

- 금년한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치열한 무역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

2. 세계각국의 수입규제 전망과 근거

가. 미 국

1) '99년 수입규제 전망과 근거

- '99년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경우, 미국 산업계의 대행정부 압력 등으로 수입규제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1997	1998	1999
경제성장률	3.9%	3.5%	1.5%

자료원 : 미국 상무부 및 OECD

- 미국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전망

구 분	1997	1998	1999
무역수지	1,980억불	2,550억불	3,000억불
경상수지	1,552억불	2,286억불	2,700억불

자료원 : USTR 및 OECD

- 저가의 외국산 수입급증에 따라 의회 및 행정부에 대한 주요 산업의 보호 압력이 가중되고, 의회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대해 업계와 함께 행정부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

- 일부 민간업계,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미 국내산업 보호 및 외국의 시장개방과 무역장벽 철폐를 위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

- 또한, 클린턴 대통령과 현 행정부는 의회의 탄핵재판 등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고 2000년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 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99년 시작되는 제106차 의회에서는 보수강경파의 득세가 예상됨.
- 이에따라, 외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와 철강 등을 비롯하여 농산물과 같은 광범위한 산업분야로까지 보호주의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동남아 각국의 평가절하 및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반도체 및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
 - 엘니뇨 등 기상이변과 수출시장 축소로 인해 미국의 농업분야 위기에 직면
 -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회와 일반대중의 관심 고조로 식품 의약국(FDA) 및 농무부의 수입식품 검사 강화
-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반덤핑제도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규제조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철강분야에서의 반덤핑 제소 급증 등 80년대 이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효율성이 부각되면서 통상법 201조 등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업계의 관심 고조
 - 반덤핑제도와 관련, 일부 미 업계에서는 현 제도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가격 급락문제에는 전혀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무부 및 정부기관들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촉구

- .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80년대 “Trigger Price”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 . 또 한편에서는 철강 등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용이하도록 국내산업피해 입증요건 완화 등 미 통상법 201조의 개정을 촉구

2)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전망

- ‘98년에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일부품목의 대미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에 대한 수입규제와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시화될 전망
-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 ‘97년 85억불 적자 → ‘98년(1- 11월) 22.4억불 흑자 기록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중 가장 심한 견제가 예상되는 부문은 철강제품임.
- 미 철강업계 노조대표들은 이미 ‘98년 11월 5일에 클린턴 대통령을 방문하여 철강제품에 대한 쿼타설정 등 수입제한조치를 요구
- 지난 1월 7일에는 미 행정부가 철강산업 구제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철강업체 소재주 의원들을 중심으로 철강산업 보호조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거나 제출 준비중
- . ‘99.1.19일 Ralph Regula 하원의원(민주, OH)은 74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 제소시의 “실질적인 피해” 입증 요건을 삭제하고, 철강제품에 대한 상무부의 수입승인제도(Steel Import Permit)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 등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

- Rockfeller 상원의원은 철강쿼타부과(즉, 월별 철강수입 쿼타를 설정하고, 쿼타소진 이후의 추가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 예정
- James A. Traficant, Jr. 하원의원(민주, OH)는 일본, 러시아, 브라질 및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철강수입을 3개월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 예정

<철강산업 구제방안 보고서 주요내용>

① 미국 철강산업 현황

- 해외수요감소, 가격하락이 미국의 철강수입급증 및 가격하락 야기
- 미국 철강수입이 '98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특히, 열연강판의 경우 66.3% 증가)
- 수입품 시장점유율 전년동기 24.2%에서 29.5%로 증가
- 수입증가의 78%를 일본(42%), 한국(18.5%), 러시아(17.5%) 3개국이 차지

② 향후 조치계획

- 불공정무역관행 저지를 위한 양자간 협상 노력
- 불공정관행에 대한 미 통상법적용 강화 : 조사기간 단축, 긴급상황 적용, 상계관세규정강화, 보조금 및 정부지시 대출 제거
- 74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 적극 활용
- 철강수입 감시를 위한 경보체제 구축 :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감시
-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 : 철강업계에 대해 5년간 3억불의 세금경감
- 철강근로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 상무부의 경제개발위원회에 5천만불의 기금 조성

- '98년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제조치(조사중 포함)를 받고 있는 총19개 품목중 12개 품목이 철강제품이며, 향후 형강, 철근 및 강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추가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수출 동향

구 분	1997	1998(1- 11월)
금액(백만불)	815	1,358
증가율	13.3%	85.2%

○ 이밖에, 한보철강 지원 및 대기업간 사업교환(Big Deal)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규제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상존

- 미국의 강관협회는 우리나라 한보철강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는 한보철강 자산매각을 면밀히 관측하고 있어 한보철강 매각시 매각방식에 따라 보조금 문제가 제기될 전망

- 특히, 미국은 '98년 10월 제출된 '99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에서 미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정부의 한보철강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내 미국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

- 또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간 Big Deal과 관련해서도, 미국업계 및 행정부는 최근 대외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의 독점금지법 저촉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미국 독점금지법의 대외(역외)적용 : 미국 기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쟁제한 행위를 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

. 또한, 미국정부는 외국의 경쟁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통상법 301조에 의거 일방적 무역보복조치 발동

나. E U

1) '99년 수입규제 전망과 근거

-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으로 EU의 경제성장률이 '98년 2.9%에서 '99년에는 2.4%로 낮아져 수입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또한 '99년 1월 도입된 유로화가 강세를 시현하면서 유럽상품의 수출가격 인상 및 수입가격 인하를 가져와 단기적으로는 유럽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수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
- '98년말부터 유럽 제조업계의 제조업 신뢰도 및 제조업 생산지수 등 제반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 : 유로지대 참가국인 EU 11개국의 제조업 생산지수가 '98년 10월의 49.6 → '98년 12월에 46.9로 감소
-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 및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동구 및 여타 국가들은 아시아 대체시장 모색을 위해 대EU 수출에 공격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EU 역내업체의 시장지키기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즉, 유럽업체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대유럽 덤핑수출을 행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어 있어 '99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및 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보다 빈번해질 전망
- 실제로, '97년말부터 아시아 국가의 경제위기로 제3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음.
- . 인도산 합성제 로프('98.1), 중국/인니/태국산 가죽 또는 플라스틱 부착 신발('98.2), 아시아 7개국산 개인용 FAX 기기('98.4), 인니/파키스탄산 베드린넨('98.7), 인니산 3.5인치 마그네틱 디스크('98.7) 및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98.8)등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특히, 수입이 급증한 철강재에 대해 전방위적인 산업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역내업체도 동일품목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동시에 제소하는 경향을 보임.
- . 한국 및 인도산 스텐레스 강선('98.6), 슬로베니아 및 남아공산 스텐레스 중후판('98.9), 대만/인도/남아공산 핫코일('98.11)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및 제소
- EU집행위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EU시장이 아시아 상품 및 서비스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확대로 역내업체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
- '98년 10월 바세프스키 USTR 대표의 아시아산 철강에 대한 EU의 수입규제 자제 요청에도 반대입장 천명

2)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전망

- '98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컬러TV 등 8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4개 품목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받고 있는데, '99년에도 철강제품에 대한 사전수입감시를 비롯하여 대유럽 수출이 급증한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잇따를 전망
- 제3국산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 EU의 세이프가드 규정에 의거 96년부터 적용해온 역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사전수입감시 제도를 99년에도 계속 실시기로 결정

<EU의 역외국산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 적용기간 : '99.1.1 - 12.31
- 대상국가 : 역외국(단, EFTA 국가산은 제외)
- 수입절차
 - .. EU 철강 수입상들은 한국 등 역외국산 철강 수입시 EU회원국 관할당국이 발급(수입상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내 발급)한 감시서류를 통관시 제출해야 함.
 - .. 감시서류 이외에 별도로 판매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과 송장도 함께 제출해야 함.
 - .. 실제 거래가격이나 물량이 감시서류에 기재된 것보다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입이 금지됨.
- 사전수입감시제도 대상 철강제품(CN 번호)
 - 7208.1000/2500/2600/2700/3600/3710/3790/3810/3890/3910/3990/4010/4090/5110/5130/5150/5191/5199/5210/5291/5299/5310/5390/5410/5490/9010
 - 7209.1500/1610/1690/1710/1790/1810/1891/1899/2500/2610/2690/2710/2790/2810/2890/9010
 - 7210.1110/1211/1219/2010/3010/4110/4910/5010/6110/6910/7031/7039/9031/9033/9038
 - 7211.1300/1410/1490/1920/1990/2310/2351/2391/2399/2920/2950/2990/9011/9090
 - 7212.1010/1091/2011/3011/4010/4091/5031/5051/6011/6091
 - 7213.1000/2000/9110/9120/9141/9149/9170/9190/9910/9990
 - 7214.2000/3000/9110/9190/9910/9931/9939/9950/9961/9969/9980/9990
 - 7215.9010
 - 7216.1000/2100/2200/3111/3119/3199/3211/3219/3291/3299/3310/3390/4010/4090/5010/5091/5099/9910
 - 7225.1100/1910/1990/2020/3000/4080
 - 7226.1110/1190/1910/1930/1990
 - 7228.1010/1030/2011/2019/2030/3020/3041/3049/3-61/3069/3070/3089/6010/7010/7031/8010/8090
 - 7301.1000 - 7304, 7306 - 7307.9311/9319/9930/9990

- 또한, '98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역외 6개국산 핫코일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를 행한 바 있는 유럽철강협회 (EUROFER)는 '99년초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관세를 제소한다는 입장
- 반도체의 경우에는 EU전자부품협회(EECA)가 '98년 11월 EU집행위의 한국산 DRAM 반도체 반덤핑 제소 기각조치를 비판하면서 한국업체의 원가이하 판매에 따른 손실과 구조조정에 수반된 비용이 IMF 구제금융에 의해 보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
- 이밖에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및 배기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CE마크나 에코라벨 부착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대 EU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유럽업체에서는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가 우리나라에 지원한 자금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조선, 철강 등의 특정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 EU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를 양자간 및 다자간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것을 주장
- 우리업체의 대EU 선박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EU 조선업체가 집행위 및 각 회원국 정부에 보호조치 필요성 제기
- . '98년 11월 EU 산업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한국 선박에 대한 반덤핑 조치 필요성 및 IMF 구제금융 사용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98년 11월말 서구조선협회(AWES) 회의에서도 한국 조선소의 저가 수주 및 부실조선소에 대한 정부지원문제 거론
- . EU집행위는 '99년 3월 Bangemann 산업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을 방문, 동 문제를 협의할 계획

다. 일 본

1) '99년 수입규제 전망 및 근거

- 일본은 최근 수년간 무역수지 흑자가 점차 증가하는 등 대외무역 흑자기조가 정착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나 움직임은 거의 없음.
 -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96년 620억불 → '97년 830억불 → '98.1-11월 958억불(전년동기비 30.7% 증가)로 지속 증가 추세
 - 특히 대미흑자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
- 또한, '98.1-11월 일본의 수출은 전년동기비 8.3% 감소한 3,529억불, 수입은 17.5%가 감소한 2,571억불을 기록하여 전체교역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대외교역 확대가 통상정책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일본정부는 새로운 수입규제 조치나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무역장벽이나 행정규제 등을 토대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적절히 규제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즉, 농수산물에 대한 쿼타제 등과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비롯해서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기존의 국내법규나 행정규제 등을 얼마나 완화해 나가느냐가 대일 수출촉진에 중요한 관건
- 한편, 최근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99년 상반기까지는 엔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엔환율 변화에 따른 외국상품의 수입급증시에는 일본정부와 업계의 규제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전망

- 일본의 무역정책 및 최근 일본의 무역흑자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주요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농수산물에 대한 쿼타제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GSP 공여품목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로 대일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수입규제 조치 적용
 - . 고관세 : 섬유 및 의류, 여행용 가방, 신발류, 식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불리
 - . 광어, 고등어 등 주요 9개 수산물에 대한 수입쿼타 : 여타국의 수입할당액은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할당액은 '83년의 4천만불이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
 - . 구두 및 피혁제품에 대한 관세할당 : 관세할당 수준을 넘어서는 수입구두 및 피혁제품에 대해서는 48.8% 또는 4,612엔중 높은 쪽의 관세를 적용
 - . 가공식품에 대한 이중검사 : 우리나라산 가공식품 통관시 우리나라 검사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제조과정 및 성분분석표 등을 제출토록 하면서, 통관이후에는 일본 가공식품위생협회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검사에 따른 수출비용 상승 초래
- GSP 수혜대상 품목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GSP 공여 완전중단 가능성 증대

- . '98.4.1부터 우리나라산 철강제품과 섬유, 화학제품 등 총78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한 GSP 중단
- .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후, 일본산업계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GSP 공여중단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어, 현재의 유효기간 만료시(2001.3.31)까지는 대상품목이 계속 줄어들고 그 이후부터는 GSP 대상국에서 완전 제외될 것으로 전망

라. 중 국

1) '99년 수입규제 전망

- 중국은 현재에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상태이나,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나 기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상존함.
-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약 17% 수준으로 여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 수입허가증 품목, 수입쿼타 품목 등을 지정하여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고,
- 또 수시로 특정분야의 공업육성을 위해(주로 기계.전자제품 위주) 수입시 유관부문의 추천을 요하거나 수입자격을 외화 보유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음.
- '98년부터 본격화된 정부 및 국영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의 실업자 발생, 금융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수입상들의 위축, 그리고 전체수입의 60%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변통 무역에 대한 단속강화 등이 수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 특히, '99년에는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입규제 및 보호주의 조치의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 '98년에는 436억불의 무역흑자 및 530억불의 외자유치를 달성했고, 경제성장률도 7.8%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99년에는 7%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전망 (* 중국정부는 '9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8%로 설정하고 최소한 7%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현여부는 불투명)
-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7%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중국정부가 금년도 경제운영의 목표를 내수시장 부양으로 정하자, 내수시장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에 따른 수요유발효과를 수입이 아닌 중국 국내의 공급요인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산하 연구소는 금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수진작을 통해 7%이상의 경제성장을 하려면 민족공업육성, 보호주의 시장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2)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전망

- 변통무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대중 수출 타격
 - 중국의 수입중 60%는 어떤 형태로든 밀수를 포함한 변통무역과 관련되어 있는데(자동차의 경우는 90%), '98년 7월말 주용기 총리의 강력한 지휘아래 변통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 대규모 밀수의 배후기관이 되어온 당, 정, 군의 경영활동 참여

금지 및 산하 기업들을 즉시 지방정부에 넘기도록 조치하고, 대대적인 밀수 단속을 전개

- 금년들어서는 공안국, 무장경찰사령부, 인민해방군, 세관, 세무국 등에서 지식수준이 높고 부패경력이 없는 참신한 인력 10,000명으로 Anti-smuggling Police를 창설, 규제강도를 더 높일 계획
- 중국정부의 변통무역 단속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 기계, 석유화학, 섬유 등의 대중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향후 단속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더 큰 수출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증대로 인한 피해 예상

- 중국은 '97.3.25일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97년 11월10일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행하고 '98년 7월10일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동 조치로 반덤핑 조치의 효과를 확인한 다른 업종의 제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이 과잉공급상태에 있거나 고부가가치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사진필름, 베니어합판, 전전자 교환기 등에 대한 중국기업의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포항제철의 경우, 우리나라산 냉연/열연 강관에 대한 중국현지 호응도는 매우 높지만 수출물량을 계속 늘릴 경우에는 제소할 수도 있다는 중국 철강업계의 구두경고로 스스로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정부의 잦은 수입정책 변경 및 직접적인 수입규제조치 발효도 중국으로의 수출애로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하거

나 까다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내 산업규모가 크고 종사기업 및 인원이 많은 기계.전자제품이 주요 대상분야임.

- 일례로, 중국정부는 '98.1.1일부터 중고 기계전자제품의 수입을 규제(즉, “국가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사무실”의 수입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98.5.1일부터는 수입기전제품의 표준검사를 강화(즉, 표준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만 수입을 허가)한 바 있음.
- 또한, 공급과잉으로 중국내 관련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 디젤유와 가솔린의 경우에는 '98.9.20일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함.
- . '98년 2월부터 중국기업들에게 디젤유와 가솔린의 수입을 중지하고 국산품 사용을 지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아예 수입을 금지시킨 것임.

마. 대 만

1) '99년도 수입규제 전망

- '99년의 경우 대만의 對韓 무역적자 규모는 '98년대비 다소 줄어들 것이나 여전히 한국이 일본에 이어 2위 무역적자국으로 자리잡을 전망임에 따라 대만의 對韓 수입규제 및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통상공세는 올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의 대대만 무역흑자는 '96년 1,280백만불에서 '97년 2,191백만불, '98년 1-11월 3,149백만불로 매년 급속 확대 (* 특히, 대만 통계기준 '98년 對韓 무역적자 규모는 4,184백만불에 달함)
- 대만은 '99년의 경제성장을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불균형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98년 대만경제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연초 설정한 목표치 6.2%에 훨씬 미달하는 5.5%에 그친 가운데 '99년 역시 5%를 겨우 넘길 것으로 전망
- 특히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우리의 대대만 주요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대만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산 석유화학, 철강, 방직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 덤핑 판매되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각 조합 및 협회와 연계하여 품목별 산업피해규모 조사, 수입규제제도 홍보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함.

2)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규제전망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대만의 수입규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99년에도 주로 철강제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PVC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
 - 대만은 東和鋼鐵企業股份有限公司가 '97년 12월과 '98년 2월 두 번에 걸쳐 신청한 한국산 H형강의 반덤핑 제소건에 대해 98년 4월 54.81%의 반덤핑관세를 잠정 부과한데 이어 8월이후 31.46%로 인하하여 재부과중임.
 - '98년말 대만 무역조사위원회는 臺灣區鋼線鋼纜工業同業公會가 신청한 한국, 스페인, 인도산 강선류에 대한 긴급수입규제 안건에 대해 동 품목이 저가로 덤핑수입되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할 것으로 예측

- 또한 燐聯公司는 한국산 스텐레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한국 및 일본산 스텐레스강 열연제품에 대해서도 덤핑수입여부를 면밀히 관찰중이라고 발표

- . 동 사는 현재 한국산 2B(노면판) 스텐레스강제품이 저가로 대거 수입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

- . 즉, 한국산 2B 제품은 '96년도 수입량이 450톤에 불과하던 것이 '97년들어 900여톤, '98년 5월까지 6,100여톤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가격도 '98년 5월의 톤당 1,280불(NT\$ 42,000 상당)에서 '98년말에는 톤당 1,030불까지 떨어져 대만업체의 판매가 하락 및 이에따른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힘.

- 이밖에 대만 최대 철강업체인 中鋼公司도 형강, 판재, 선재 등 각종 한국산 철강제품이 국내판매가에도 못미치는 저가로 대거 덤핑판매되고 있어 정부는 긴급 수입구제제도 발동을 통한 수입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

○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

- 한편, 대만 최대의 유화업체인 臺灣塑膠公司는 '98년 8월 6일 한국업체의 대대만 석유화학원료 저가수출에 대해 조만간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저가공세로 맞대응하여 수출할 것임을 발표

- 이는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대만업체의 직접적인 對韓 수입규제 사항은 아니나 세계적 유화업체인 동 기업이 우리나라의 저가공세에 가격인하를 통해 정면 맞대응할 것임을 밝혀 전세계적인 가격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로인한 이윤감소로 우리기업의 경영난 악화까지 예상되고 있음

바. 동남아

1) '99년 수입규제 전망

- '99년 동남아 각국의 경제는 구조조정 시행, 경상수지 흑자 실현,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다소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 태국 : '98년 - 8% → '99년 0.5 - 1%
- . 인도네시아 : '98년 - 14% → '99년 - 5 - 3%
- . 말레이시아 : '98년 - 6.2% → '99년 - 2%

- 대외교역 측면에서는 동남아 각국의 총체적인 경기부진 및 수요감소에 따른 수입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인위적인 수입억제책 보다는 수출확대 정책에 더 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대내적으로 전례없는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률을 겪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수출확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 및 외환보유고 확보 등을 위한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태국의 경우 실업률 및 기업도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국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인도네시아도 실업률('98년말, 22%)과 외채규모(약 1400억불)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섬유제품, 화학제품, 철강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실제로, 태국은 '98년에 민간주도의 국산품 애용운동("Eat Noodles No Hamburgers", "Buy Thai", "Thai Help Thai") 전개하였으며, '97년과 '98년 2차례에 걸쳐 수입관세를 인상

하고 수입관세가 5% 이상인 물품에는 10%의 특별세 (surcharge)를 부과하고 있음.

<태국의 수입관세 인상조치>

- '97.10.14일 12개 품목에 대해 평균 20% 인상
 - . 자동차 : 42 또는 68.5% -> 80%
 - . 향수 및 화장품 : 20% -> 30%
 - . 신 발 : 20% -> 30%
 - . 크리스탈 제품 : 20% -> 30%
 - . 보석류 : 20% -> 30%
 - . 렌즈 : 5% -> 30%
 - . 안경테 : 5% -> 30%
 - . 카메라 : 5% -> 30%
 - . 시 계 : 5% -> 30%
 - . 펜 : 5% -> 30%
 - . 라이타 : 5% -> 30%

- '98.2.24일 사치품으로 분류된 9개 품목 관세율 추가 인상
 - . 담 배 : 30% -> 60%
 - . 모 직 : 10% -> 40%
 - . 향 수 : 30% -> 40%
 - . 화장품 : 30% -> 60%
 - . 가죽 핸드백 및 벨트 : 30% -> 40%
 - . 신 발 : 30% -> 40%
 - . 크리스탈 제품 (식탁용) : 30% -> 35%
 - . 크리스탈 제품 (장식용) : 30% -> 60%
 - . 의 류 : 30% -> 60%

2)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규제 전망

-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철강, 화학제품, 섬유 및 의류 등임.

○ 철강

- 태국은 우리나라산 H형강에 대해 '98년 4월에 덤핑 확정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98년 3월에 우리나라산 석도강판 (Tin Plat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
- 태국이 반덤핑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총 9개 품목중 8개가 철강제품이며, 현재 태국내 일부 제철소는 감산 또는 생산중단 상태에 있어 향후 철강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음.

○ 화학제품

- 태국의 경우,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했으나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인도네시아는 '96년부터 자국 화학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에틸렌 및 프로필렌에 대해 기존 관세 이외에 2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고, 에틸렌, 화학원료, 윤활유 등을 특정 업체에서만 독점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섬유 및 의류

-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섬유사 등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0- 10%로 낮게 책정하고 있으나, 직물 및 의류 등 완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25%, 부가세 10% 등의 높은 관세를 부과

○ 전기.전자제품

-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생산되는 제품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수입 완제품에 대해서 40- 55%의 고관세 부과

사. 중남미

1) '99년 수입규제 전망

- IMF 체제하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고이자율 및 긴축정책 시행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99년에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99년 1월 브라질 주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중남미 및 세계의 금융위기 재발이 우려되고 있음.
- 중남미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이 '98년 11월에 IMF 구제금융을 받는데 이어 '99년 1월에 미나스제라이스 주(1.6)와 리우그란데스 주(1.11)가 연방정부에 대해 대외채무 상환불가를 선언
- 이로 인해 브라질의 헤알화를 비롯하여 멕시코의 페소화 등이 평가절하되고, 브라질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주가가 3-4%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 . 헤알화 환율 : '98.12.31 1.20/달러 → '99.1.20 1.60/달러
 - . 페소화 환율 : '98.7.30 8.90/달러 → '99.1.13 10.7/달러
 - . 상파울러주식시장 주가지수는 1월12일에 전날대비 7.6% 하락
- 브라질 주정부의 모라토리움이 브라질 연방정부의 외환위기로 확산될 경우, 세계각국의 경제성장 및 대중남미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 브라질의 외환위기가 가속화되고 브라질 및 여타 중남미국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중남미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주정부의 모라토리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브라질의 국제신인도 하락에 따라 IMF 외환위기 극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

2)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규제 전망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아 상품의 범람을 우려하여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산을 주요 타겟으로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수입관세 인상 및 반덤핑 제소를 비롯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사전 수입신고제도 도입, 라벨링법 기준과 통관검사 강화 등의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억제
- 특히, 금년에는 브라질의 외환위기 여파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위기 재연이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수입규제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99년 1월 1일부터 전품목 관세인상 단행
 - 세수보전을 위해 당초 제안된 15%의 전화세 신설안과 수출산업 부가세 영세율 폐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그 대안으로 수입 관세 인상 조치를 결정
 - 소비재는 최고 10%포인트까지, 기계류 등 자본재와 원부자재 등 중간재는 최고 3%포인트까지 인상
 - 자유무역협정 체결 8개국(미국, 캐나다,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니카라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멕시코 정부는 동 조치가 잠정 운용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최소한 국제 원유가가 상승기조로 반전되어 멕시코 재정이 충실해지는 시점까지 무기한 적용될 전망

- 우리나라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 관세인상 내역 (※ <부록 2>)

- . 컴퓨터 부분품과 부속품 : 0% → 3.0%
- . 음성재생기기용 및 영상재생기기용 부품 : 10% → 13.0%
- .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 20.0% → 30.0%
- . 냉장고, 냉동고 : 20.0% → 23.0%
-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15.0% → 18.0%

○ 멕시코의 자동수입신고 제도

- 아시아산 수입품이 멕시코 시장에 범람하자 송장 언더밸류 및 덤핑 등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기치로 '98년 7월 27일에 전격 도입
- . 우리 주종 수출품인 섬유류, 신발류, 화학제품 및 철강재 등이 대상품목 :
- '98년 2월에 도입된 수입감시제도를 더욱 강화한 조치로, 종전의 제도가 “사후감시” 성격을 띠는 반면 자동수입신고 제도는 “사전감시”이며 사실상의 수입승인제도
- 아시아 상품 수입상들은 수입물품이 멕시코 영토내에 도착하기 전에 통산부 상역서비스국에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통산부가 발행하는 수입신고필 확인서 사본을 수입면장과 함께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 멕시코의 수입물품 자동선별검사제도

- 수입물품의 정보(품명, 원산지, 가격, 특성 등)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위험요인”을 종합분석하는데, 원산지가 한국 등 아시아인 경우 위험수치가 높게 나오도록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 북미나 유럽산에 비해 세관검사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
- '9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콜롬비아의 세이프가드 조치

- 중국 등 아시아산 저가품 수입이 급증하자 '98년초에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을 개정(절차기간 단축)하고,
- '98년 7월에는 우리나라산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향후 1년간 수입수량을 제한

○ 아르헨티나의 수입상품 통관검사 강화

- '98년 6월부터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하여 가장 엄격한 통관물품 검사방식인 “까날 로호(Canal Rojo ; 적색선)”를 적용하고 수입서류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

○ 브라질의 직물류 최저가격제

- 인보이스상의 제품가격이 브라질 세관에서 자체작성한 최저가격 (국제가격에 비해 높게 설정) 이하일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받음.
- 이로 인해 통관지연은 물론이고,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판명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강화

○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능성

-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및 일본산을 비롯한 아시아산과 CIS국가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기 위한 국내산업 피해여부 조사중
- 멕시코철강협회(CANACERO)가 반덤핑 조사착수를 의뢰하였으며, 특히 멕시코의 최대 철강기업인 AHMSA와 HYLSA가 한국산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이에 따라 “STEEL WATCH”로 명명되는 멕시코의 철강제품 수입모니터링 시스템이 상기 철강재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
- 또한, 브라질 유일의 스테레스강 생산업체인 Acesita사가 한국 및 대만산 스테레스강에 대해 반덤핑제조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향후 브라질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

II. 최근 세계각국의 수입규제 특징 및 형태

1. WTO 무역분쟁사례로 본 각국의 수입규제

- '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선 경제활동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각국간 통상마찰과 무역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WTO 출범이후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무역분쟁 사례가 총 155건(연평균 39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음.
 - '95년 26건 → '96년 38건 → '97년 50건 → '98년 41건으로 매년 증가
 - GATT 47년동안 약 300건의 제소(연평균 6.4건)가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연간 제소건수가 무려 7배나 증가
 - WTO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과 구속력이 반영된 결과
- 분쟁국가별 현황을 보면
 - 분쟁제소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등이며, 가장 많이 피소된 국가는 EU(개별 회원국에 대한 피소사례 포함), 미국, 일본, 인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은 GATT의 분쟁사례가 대부분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에 의해 행해진 것과는 달리, WTO 체제하에서는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개도국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임.
 - 실제로 제소국과 피소국중 개도국의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또한 전체 분쟁건수중 선진국들간의 분쟁 보다 선.개도국간의 분쟁건수가 더 많아졌고, 개도국들간의 분쟁사례도 증가일로에 있음.

- . GATT에서는 선진국간의 분쟁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선.개도국간 분쟁비중은 25%에 불과했으나, WTO 체제하에서는 선진국간의 분쟁이 42%인 반면 선.개도국간의 분쟁이 48%로 높아졌으며, 개도국들간 분쟁도 10%를 차지
- . 개도국의 제소율은 31%, 피소율은 43%로 증가
- 이처럼 개도국들의 피.제소 사례가 늘어난 것은 세계무역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점증함에 따라 선진국들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개도국들도 이전의 소극적이고도 수세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 인도, 한국,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들에 대한 피소사례 급증
- . 특히, 우리나라는 총 8건을 제소당함으로써 선.개도국을 통털어서는 제6위, 개도국중에서는 인도에 이어 제2위의 피소국으로 등장

<표 1> WTO 체제하의 선.개도국 무역분쟁 현황
(1998년말 기준)

분쟁건수 기준			피.제소 국가수 기준		
(제소)	(피소)	건수		제소국(제소율)	피소국(피소율)
선진국 → 선진국		66	선진국	118 (69.4%)	88 (56.8%)
선진국 → 개도국		49			
개도국 → 선진국		27	개도국	52 (30.6%)	67 (43.2%)
개도국 → 개도국		16			
계		158	계	170	155

주 : 복수국의 제소건 때문에 분쟁건수와 피.제소국 숫자 불일치

< 표 2 >

WTO 무역분쟁 피·제소국 현황

제 소 국	건 수	피 소 국	건 수
미국	49	미국	28
EU	41	EU(*)	25
캐나다	13	일본	12
인도	8	인도	12
일본	6	캐나다	9
브라질	6	한국	8
멕시코	6	브라질	8
태국	4	아르헨티나	6
뉴질랜드	4	호주	5
스위스	3	터키	4
한국	2	인도네시아	4
온두라스	2	멕시코	3
과테말라	2	칠레	3
필리핀	2	아일랜드	3
호주	2	베네주엘라	2
아르헨티나	2	파키스탄	2
칠레	2	필리핀	2
헝가리	2	벨기에	2
싱가폴	1	그리스	2
베네주엘라	1	슬로바키아	2
페루	1	말레이시아	1
코스타리카	1	폴란드	1
우루과이	1	헝가리	1
에콰도르	1	포르투갈	1
홍콩	1	과테말라	1
스리랑카	1	영국	1
말레이시아	1	덴마크	1
파키스탄	1	스웨덴	1
콜롬비아	1	페루	1
파나마	1	태국	1
폴란드	1	네델란드	1
인도네시아	1	프랑스	1
		체코	1
계	170	계	155

주(*) : 공동피소건만 집계, 개별 회원국에 대한 피소건 포함시 총 35건

○ 무역분쟁 사례를 WTO 협정분야별로 보면

-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관련 제소가 2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농업협정(25건), 기술장벽협정(21건), 수입허가절차협정(19건),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16건), 위생.검역협정(16건), 지적재산권 협정(14건), 반덤핑협정(13건), 서비스협정(9건), 섬유협정(9건), 정부조달협정(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¹⁾
- GATT 체제와는 달리 WTO 체제하의 무역분쟁은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분야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새로운 분야의 무역분쟁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
- . GATT 체제하에서부터 시행되어온 기존의 협정 이외에 WTO 출범 이후 새롭게 마련된 협정(투자조치, 지적재산권,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분쟁이 전체의 1/4을 차지
- 이는, 무역.통상마찰의 대상이 단순히 제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분야를 벗어나 제품의 기술규격, 특허권보호, 판매 및 유통단계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무역장벽의 유형별로 보면

- GATT 체제하에서의 분쟁은 주로 관세, 수량제한 등의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 반면, WTO 체제하에서는 기술규격이나 표준, 위생 및 검역조치, 차별적인 과세조치,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조치에 대한 제소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 제소대상이 되는 무역장벽의 유형이 종래의 관세 분야에서 통관, 검역, 반덤핑, 기술규정, 조세제도, 무역관련 투자조치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1) 하나의 분쟁건에서도 복수의 협정 분야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각국의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기술력의 차이를 이용하거나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한 규제조치, 판매 및 유통과정상의 차별, 정부조달상의 차별 등 각종 비관세장벽이 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관세, 수량제한, 보조금, 수입허가절차 등에 관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관세/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표 3> WTO 분쟁사례 유형별 분포

무역장벽 유형	제소건수
관세	22
기술장벽(위생·검역조치 포함)	19
수량제한	18
보조금	16
지적재산권	14
반덤핑	13
차별과세(내국세제도)	12
투자관련조치	11
수입허가절차	9
서비스	7
정부조달	5
기타	7

○ 품목별로는

- 농산품 보다는 공산품에 대한 무역분쟁 비중이 더 높으며,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등과 같은 기존품목들 외에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의 첨단제품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또한, WTO에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무형의 교역분야에 대한 분쟁건수가 많아지고 있음.

2. 반덤핑 규제조치 확산

-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세계의 수입시장 위축과 더불어 보호주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면서 수입국의 수입규제조치(특히, 반덤핑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반덤핑 제소건수는 '92년 정점에 달한 후 미국의 경기호조와 함께 감소세를 보였으나, '98년 들어 다시 급증

. '92년 89건 → '93년 36건 → '94년 59건 → '95년 18건 → '96년 13건 → '97년 23건 → '98년 상반기 22건

- 수입급증시는 물론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지거나, 반덤핑 제소만으로도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업들이 경쟁전략의 일환으로 수입규제조치를 활용하는 경향 증대

. EU의 반덤핑 제소는 대부분 우리의 대EU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98년 5월에 제소된 철강로프와 케이블의 경우, '97년도 대EU 수출은 전년보다 16.6% 감소했으며, '98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4.9%나 감소

. 미국 철강업체는 미국시장에 외국제품이 밀려든다 싶으면 즉각 제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제소자체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둔화시키는 효과 때문임.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전체 불공정무역관련 제소건수중 철강관련 제소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철강업체는 반덤핑 제소후 최종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290일간의 기간중에는 적어도 수입을 막을 수 있음)

- 특히,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수입규제 수단인 반덤핑조치는 과거에는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에는 개도국들까지 가세하여 이를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UR협상이 시작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와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들이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고, WTO 체제 출범이후에는 더욱 관세 이외에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수단의 필요성 대두
- 전세계의 반덤핑조치 건수중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 4개국의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개도국들의 반덤핑 조치 활용은 증가세
- 최근들어 아시아(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의 반덤핑 제소 급증

< 표 4> 선.개도국의 반덤핑조치 활용 추이 (비중)

구 분	1981- 1985년	1986- 1990년	1991- 1995년	1998년(*)
선진 4개국 (미국,EU,캐나다,호주)	99%	89%	79%	40%
기 타 (개도국 포함)	1%	11%	21%	60%

주(*) : 98년은 상반기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품목) 기준
 자료원 : WTO

- 실제로, 우리나라는 '98년말 현재 해외시장에서 총 69건에 달하는 반덤핑 규제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중 '98년 들어서 제소된 것만도 18건이며, '98년에 잠정 또는 확정 판정을 받은 것도 16건 ('98년 제소 및 판정 3건 포함)에 달함. (<표 5>, <부록 1> 참조)

- 우리나라가 '98년에 반덤핑 제소 또는 잠정/확정 조치를 받은 31건중 20건이 개도국에 의한 것임.

. 남아공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3, 대만 2, 태국, 인니, 말련, 중국, 이집트, 터어키,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파나마 각 1건씩

- '99년 1월 현재 개도국 전체의 규제건수 28건중 20건이 '98년 이후에 취해진 것으로, 최근 개도국의 對韓 수입규제 확산 추세를 반영

< 표 5> '98년중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규제조치

국 가	품 목	주 요 규 제 내 용
미국	스텐레스 선재	97년 7월 제소, 98년 7월 3.18- 28.44% 덤핑확정
	스텐레스 강선	98년 3월 반덤핑 제소
	스텐레스 열연후판	98년 3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합성고무	98년 4월 반덤핑 제소
	스텐레스 냉연강판	98년 6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EU	스텐레스 파스너	96년 12월 제소, 98년 2월 24.0- 26.7% 확정관세 부과
	팩시밀리	96년 12월 제소, 98년 4월 7.5- 25.1% 확정관세 부과
	철강로프와 케이블	98년 5월 제소
	스텐레스 강선	98년 6월 제소
	폴리에스터 섬유사	98년 8월 제소
캐나다	스텐레스 스틸봉강	98년 12월 제소
호주	PS레진	97년 12월 제소, 98년 12월 3%- 19% 확정관세 부과
태국	H- 형강	97년 4월 제소, 98년 4월 31.65- 44.70% 확정관세 부과
인니	석도강판	98년 3월 제소,
말련	골심지	97년 8월 제소, 98년 4월 17.3- 35.4% 확정관세 부과
인도	Terephthalic Acid	96년 4월 제소, 98년 4월 Rs. 1,490/MT 확정관세 부과
	폴리스티렌	97년 10월 제소, 98년 11월 22% 확정관세 부과
	공업용 재봉바늘	98년 1월 제소
중국	신문용지	97년 12월 제소, 98년 7월 17.11- 55.95% 잠정관세 부과
대만	H- 형강	98년 2월 제소, 98년 11월 확정관세 부과
	Steel Wire	97년 11월 제소, 98년 10월 확정관세 부과
남아공	자동차 타이어	97년 1월 제소, 98년 7월 확정관세 부과
	스텐레스 주방용품	97년 11월 제소, 98년 10월 확정관세 부과
	아크릴 담요	98년 4월 제소, 98년 12월 11.50란드/kg 잠정관세 부과
	용접스텐레스 철강관	98년 8월 제소 '98년 12월 47.6% 잠정관세 부과
	카본블랙	98년 8월 제소
	스텐레스 싱크	98년 9월 제소
	광케이블	98년 9월 제소
이집트	자동차 타이어	98년 9월 제소
터어키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98년 제소
콜롬비아	자동차 타이어	98년 7월 제소
베네주엘라	일회용 주사기	97년 11월 제소, 98년 8월 3.5% 잠정관세 부과
파나마	철근류	98년 12월 제소

3. 각종 표준 및 기술규격

-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수입규제 수단이 제약을 받으면서 각종 표준 및 기술규격 적용을 통한 기술장벽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임.

- 무역분쟁 사례에서도 기술장벽과 관련된 분쟁건수는 GATT 체제 47년간 총 15건에 불과했으나, WTO 출범이후 4년동안 ('95- '98년)에만 모두 21건(* 중복제소건 포함)

- 미상무부와 EU집행위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의 기술장벽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규모는 총수출의 1/4에 달하며, 수출감소 효과는 15% 정도로 평가되고 있음.

- 미상무부는 98년 대의회 보고서에서 외국 표준제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국의 수출규모가 1,500억불('95년 기준, 총수출의 약 1/4)에 이르고,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 수출손실액만 200- 4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 EU집행위는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장벽으로 인한 수출손실액이 대미수출의 15%, 규격획득 비용은 총매출의 5%라고 평가

☞ 이를 우리나라 총수출('98년 기준)에 적용해 보면, 외국의 기술 장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의 수출규모는 333억불, 수출감소 효과는 200억불에 달함. (* 대미수출에 적용하면 수출 감소효과는 33억불, 규격획득비용은 11억불)

-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기술관련 표준제도가 상이하 여 대미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 미국에는 2,700개가 넘는 정부기관(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에서 독자적인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에 대한 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기준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음.

- 미국 연방정부중 가장 많은 표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약 38,000건('91년 기준)의 표준 설정
- 조달청에서도 연방정부가 필요로하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6,000건의 표준 설정
- 여타 환경청을 비롯하여 국가기관에서 공공보건 및 안전목적상 준수하도록 설정한 표준이 8,500건 정도
- 지방정부나 주정부의 표준은 적용범위가 제한적(표준설정 지역에만 해당)이지만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 : 지방정부의 표준은 주로 건축 및 전자재, 작업장 안전, 환경보호, 농업 및 식품 분야 등에 집중

<미국의 표준관련 주요 연방정부 기관>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 설정 및 검사
- Department of Agriculture : 식품의 안전보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등급 분류체계 확립
-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각종 작업용 기구 및 제조공정에 대한 표준 설정과 검사
-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소비자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및 라벨링 관장
-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과 표준 제정
-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자파 관련 안전기준 제정
-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항공기, 항공기 부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준 제정

- 이밖에 민간부문에서도 특정 산업, 전문가 또는 학술계를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표준을 설정하고 있음.
- . 미국에는 약 400여개의 민간단체들이 40,000개 이상의 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 한 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표준을 결정짓는 경우도 발생(예; MS사의 DOS 및 윈도우 프로그램)
- . 최근에는 정부기관이 독자적으로 표준을 설정하기 보다 민간 부문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토록 법제화하는 경향
- 또한, 대부분의 미국 유통업체들은 제3의 독립된 시험검사 기관을 통해 표준규격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요구하므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구와 상관없이 규격인증을 획득해야만 하는 실정임.
- .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UL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전자제품은 판매하지 않음.

<미국의 주요 규격인증 기관 및 획득 비용>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각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표준제정, 시험검사 및 인증기능 수행

※ 삼보컴퓨터의 경우, PC의 UL 규격을 획득하는데 모델당 약 \$4,500의 검사비용과 2백만원의 국내 에이전트 수수료(일부 공정 시험) 지급했으며, 규격획득에 약 6주 정도 소요

※ 음향기기 생산업체인 STK는 UL 인증획득에 모델당 \$4,500 및 사후관리비로 연간\$300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시간은 6-7개월 소요

- FDA :식품, 화장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방사선기기, 동물용 약과 사료 등의 안전성과 위생 검사 및 인증

※ 메디슨사는 초음파 진단기의 FDA 인증 획득에 모델당 6천만원(UL 인증 획득비용 3천만원 별도)의 비용과 9개월의 기간 소요

- EU의 경우에는 CE마크가 대표적인 기술장벽으로 취득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우리 중소기업체들의 대EU 수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CE마크는 1990년에 도입된 EU의 품질규격마크로, '98년말 현재 총 1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모든상품의 20%,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의 35%가 CE마크 부착대상
- . 엘리베이터 CE마크 부착 의무화 : '99년 7월 1일부터 CE마크 미부착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용 안전부품(과속방지장치, 충격흡수장치, 추락방지장치, 자동문 개폐장치, 전기안전장치 등)은 EU내에서의 판매나 운행이 금지되며 형식승인도 부여되지 않음.
- . 안경테 CE마크 부착 의무화 : 지난 94년 7월 발효된 안경테 및 안경알에 대한 지침의 경과기간 종료로 98년 6월 14일부터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안경테와 안경알은 CE마크를 부착해야 함.
- . 냉장.냉동고 CE마크 부착 의무화 : '99년 9월 3일부터 전력과소비형 CE마크 미부착 냉장.냉동고의 EU내 판매가 불가능해지는데, 동 C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0개 카테고리의 냉장.냉동고 유형별로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최대 허용 전기소비량과 최저온칸의 온도 기준을 준수해야 함.

<CE 마크 대상품목 및 획득 비용>

- CE마크 도입시기 : 1990. 1(완구)
- CE마크 대상분야 : 전자기정합성(EMC) 적용품목(무선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등 대다수 공산품 해당), 전압기, 완구, 단순압력용기, 건설용장비, 가스기기, 비자동저울, 이식용 의료기기, 개인용 보호장구, 온수 보일러, 기계류, 통신단말기, 민간용 폭약, 방폭장비, 의료기기, 승강기, 가정용 냉장고, 오락용 소형선박 등

※ EU로 Automatic X-Ray Film Processor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정원정밀공업(주)는 CE 마크 취득에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기본 비용 및 물품검사비용을 포함해서 총 1,500만원의 비용 소요

- 또한, EU는 CE마크와는 별도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E(e)마크라는 형식승인 인증마크를 적용하고 있음.

. E마크는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형식승인이고 동유럽을 포함한 전 유럽에 적용되는 반면, e마크는 부품이나 시스템은 물론이고 전체 차량(즉, 완성차)에 대한 형식승인으로 EU 15개 회원국에만 적용

. EU이사회 지침에 의거, 자동차 및 부품이 유럽내에서 유통되려면 E(e)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이는 역외국산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와 해당 부품은 모두 E(e)마크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인증이 필요한 부품임에도 E(e)마크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완성차에 장착한 경우에는 완성차도 수출 불가

. E(e)마크 획득절차 : 정보자료 작성 및 제출(제조업자→시험기관) ⇒ 공장감사(시험기관) ⇒ 인증시험(시험기관) ⇒ Test Report 작성(시험기관) ⇒ 인증서류 송부(시험기관→인증당국) ⇒ 인증서 발급(인증당국) (* 통상 2개월 소요)

<E(e)마크 대상품목>

- 자동차
 - .. 자동차 (Motor Vehicles) .. 레저용 자동차 (Recreational Vehicles)
 - .. 오토바이 (Motorcycles) .. 농업용 트랙터 (Agricultural Tractors)
 - .. 임업용 트랙터 (Forestry Tractors)
 - .. 트레일러 (Trailers)
- 자동차 부품
 - .. 안전유리 (Safety Glazing) .. 전등 (Lighting)
 - .. 안전벨트 (Safety Belts) .. 백미러 (Rearview Mirrors)
 - .. 좌석 (Seating) .. 촉매장치 (Exhaust Systems)
 - .. 엔진 (Engines) .. 보호대 (Side and Rear Protection)
 - .. 선반 (Luggage Racks)
 - .. 전자부품 (Electronic Sub-Assemblies)
 - .. 타이어 (Tire)
- 성능시험
 - .. 배기 (Emissions) .. 제동 (Brakes)
 - .. 안전벨트 장착 (Safety Belts Anchorages)
 - .. 좌석 장착 (Seat Anchorages) .. 소음 (Noise Levels)
 - .. 내부 안전 (Interior Safety) .. 전체 차체 (Whole Vehicle)

< 표 6>

해외유명규격 획득 비용

(단위 : 달러)

품 목	UL	CE	품 목	UL	CE
오디오	10,500	8,000	가스보일러	-	12,800
전기밥솥	15,000	9,000	금고(내화)	25,000	-
청소기	6,500	6,000	강화유리	2,000	-
세탁기	9,000	7,500	배터리	6,000	6,000
조명기구	10,000	8,000	전선	4,500	3,500
인쇄회로기판	3,500	3,000	커넥터	5,000	3,000
	- 4,000	- 3,500		- 10,000	- 8,000
통신장비	15,000	13,000	반도체장비	-	10,000

- 개도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대표적인 예는 멕시코의 표준 규격제도(NOM ; Norma Oficial Mexicana)
 - 멕시코정부는 NOM 규격에 관한 규정개정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토록함으로써 국내수입상 및 해외 수출업자들에게 애로를 초래
 - 잦은 주무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권리이양 불인정
 - . 일례로, 타이어의 경우 주무기관이 '88년 시행당시 상공부 → '93년 건설교통부 → '94년 이후 다시 상공부로 변경되었으나, 이전 관할기관이 인정하던 NOM의 권리이양 불인정
 - 과다한 검사부대비용
 - . 패턴과 규격별로 획득하게 되어 있어, 1개 패턴당 검사부대비용이 3,200불이므로 1개의 품목이라 하더라도 패턴이 10개인 경우에는 총 32,000불 소요
 - . 또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매년갱신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 검사를 국내 제조업체에 위임함으로써 자사제품과 경쟁되는 수입품에 대한 검사 기피
 - . 예를들면, 전기류의 경우 Philips Mexicana S.A.가, 전기기기 안전장치는 Hewlett Packard de Mexico S.A.가 담당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을 제외한 외국산 제품은 검사를 기피하거나 합격판정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 편파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외국산의 대멕시코 시장접근 장애요소로 작용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 표준규격 획득 절차 : 수입희망업체가 해당품목별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상공부 표준국에 검사결과서 제출 → 인증서 획득
- 검사비용 : 품목별로 다양
 - .. T.V. : 1,000 페소
 - .. 전자레인지, VTR, 믹서, 다리미, 녹음기 등 소형가전제품 : 825페소
 - .. 가정용 냉장고 : 1,500 페소
 - .. 타이어 : US\$ 3,200 등
- 검사기간 : 보통 2주일 정도이나 품목에 따라 1개월 이상 소요
- 신청시 필요서류 : 검사기관의 검사필요서, 신청비용 납부 증명서, 해당품목의 Invoice, 신청인의 납세증명서 사본

○ WTO의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통보문 건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술장벽의 확산 추세가 잘 나타나고 있음.

- WTO의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에 의거, WTO 회원국들은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표준, 기술규정, 인증제도 및 포장, 등급표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안을 WTO/TBT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 WTO 출범이후 WTO에 통보되는 각국의 TBT 통보문은 매년 증가 추세

<표 7> WTO/TBT 통보문 건수 추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세계전체 통보 건수	349	460	796	645
우리나라 통보 건수	6	5	11	9

- '98년에는 41개국에서 총 645건의 기술장벽을 WTO에 통보하였는데,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브라질, 태국, 멕시코 등과 같은 개도국들의 통보건수도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 선진국은 19개국에서 373건(57.8%)을 통보하였으며, 개도국은 22개국에서 272건을 통보하여 42.2%의 비중을 차지
- . 국별 분포를 보면 네델란드가 85건으로 가장 많은 통보실적을 기록했고, 그 다음은 벨기에(45건), 이스라엘(44건), 브라질(42건), 덴마크(41건), 태국(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8> WTO/TBT 통보국별 현황(1998년)

국가명	통보건수	국가명	통보건수
네델란드	85	스위스	7
벨기에	45	체코	6
이스라엘	44	뉴질랜드	5
브라질	42	이집트	5
덴마크	41	자메이카	5
태국	37	핀란드	4
EU	36	터어키	4
미국	33	싱가폴	3
멕시코	29	홍콩	2
말레이시아	28	영국	2
일본	27	엘살바도르	2
남아공	20	슬로바키아	2
볼리비아	19	베네룩스	2
프랑스	19	독일	2
캐나다	19	아르헨티나	1
스웨덴	16	오스트리아	1
노르웨이	12	폴란드	1
칠레	10	트리니다드토바고	1
스페인	9	콜롬비아	1
한국	9	필리핀	1
호주	8	계	645

- 통보된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대상품목을 보면, 섬유/화학/환경 제품 분야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는 식품/약품/의료기기, 기계/금속, 자동차/수송장비, 통신기기, 전기/전자 등의 순으로 기술장벽이 높게 나타남.

< 표 9 > WTO/TBT 통보대상 품목별 현황(1998년)

품목	건수	품목	건수
섬유/화학/환경	124	생활용품	27
식품/약품/의료기기	98	농산물	19
기계/금속	89	계측기기	15
자동차/수송장비	71	광산/보석/요업	5
통신기기	58	기타	43
전기/전자	56		
건축	40	계	645

<WTO/TBT 통보문 사례>

※ 문서번호 : G/TBT/Notif./633

- 통보국가 : 덴마크
- 대상품목 : 소형폐수처리장비
- 근거법규 : Statutory order on Test of Smal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 주요내용 : 소형폐수처리장비의 승인을 위한 시험기준을 설정함.
소형폐수처리장비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려면 1년동안 해당 장비를 거쳐 방출되는 폐수의 BOD, NH₃/NH₄, 인(phosphorus)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장비 제조업체는 전국적인 서비스 및 관리 조직을 운영 해야 함.
- 규제목적 : 폐수처리장비(부품 포함)의 품질 및 방류되는 수질 보증
- 시행일 : 1999.2.1

※ 문서번호 : G/TBT/Notif./322

- 통보국가 : 프랑스
- 대상품목 : 체온계
- 근거법규 : Order Relating to the Prohibition of the Marketing of Mercury Medical Thermometers for Measuring Human Body Temperature
- 주요내용 : 수은체온계의 판매금지
- 규제목적 : 보건 및 환경보호 (*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제품에 수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체온계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등에서도 수은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4.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조치

-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각종 규제조치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에 중대한 장벽으로 등장

- 국제환경협약 등 다자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미국, EU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높은 환경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환경관련 입법 및 규제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
- 특히, EU는 유럽인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토대로 환경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환경규제조치들을 도입, 시행중

- EU의 환경장벽

- 환경마크(Eco-Label)

- 도입시기 : 1993 (세탁기)

- 대상품목 : '98년말 현재 12개 품목 (세탁기, 식기세척기, 토양 개선제, 화장지, 세척제, 페인트 및 니스, T셔츠 및 베드린넨, 침대 매트리스, 양극전구, 단극전구, 복사용지, 냉장고 등)

- 검토중인 품목 : 신발, 오물처리용구, 건전지, 실내용 청소용품, 위생용품, 식기세척기용 세제, 샴푸, 쓰레기 백, 재생용지, 개인용 컴퓨터 등 11개 품목

- 포장재 및 포장재 쓰레기 규제조치

- 포장재 제조성분에 대한 기준 및 포장재 쓰레기 수거/재생/재활용 기준을 제정,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 포장재 중금속 용량이 그간의 600ppm에서 '99년 7월1일부터 250ppm으로 대폭 강화되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00ppm

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

- . 우리 기업들은 대EU 수출품 포장시 등 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판매후 포장재 쓰레기 수거 시스템도 마련해야 함.
-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제도
 - . '96년 4월부터 세탁기, 세탁건조기, 냉장고 등에 EU의 표준 에너지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같은해 10월1일부터 미부착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 단행
- 가정용 램프 신규 라벨링 제도 도입
 - . 모든 가정용 램프와 형광램프의 경우, '99년 7월부터 일곱 단계의 에너지 효율성 등급 이외에 상표명, 공급자의 주소, 램프 개관, 모델의 디자인 특징, 작동방법, 모델에 행해진 검사방법 등을 라벨에 기재해야 함.
 - . 2001년 1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램프의 EU 역내 판매 불가
-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 가솔린 엔진과 디젤엔진별로 2천년과 2005년 두 단계로 나누어 주요 오염물질별 배출한도를 강화
 - . 동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이 부여되지 않음.
- 버스 및 로리 배기가스 기준 강화
 - . 자동차에 대한 기준 강화에 이어 버스와 로리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도 강화

- . 정태검사와 동태검사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5가지 배기가스에 대한 새로운 배출기준을 마련했는데, 동 기준은 2천년과 2005년 두 단계로 나뉘어 적용됨.
- . 정태검사와 동태검사 결과가 각기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는 두 기준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 경상용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 경상용차중 Class II(자동차 중량 1,250kg- 1,700kg)와 Class III(1,700kg 이상) 등급의 경우 일산화탄소, 혼합가스(탄화수소와 산화질소), 분진에 대한 새로운 배출기준이 제정되어 '98년 10월 1일부터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상용차의 EU 역내 등록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음.
 - . 종전규격에 의거하여 EU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됨.
-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금지
 - . Aarhus 의정서에 의거 2000년까지 3가지 중금속과 16가지 유독성 화학물질의 EU역내 배출 및 사용이 금지되는데, 알드린, 클로르덴, 클로르데콤, 딜드린, 엔드린, 톡사펜 등은 즉각 금지, PCB는 2006년부터 생산 금지, DDT 살충제와 HCH는 향후 2년 동안 제재방안을 검토할 예정
 - . 2011년부터는 유연휘발유의 사용도 금지

< EU의 차량 배출기준 >

• 2000년부터 적용되는 디젤 연료에 대한 주요 배출기준

- .. PHAs : 최대 11%
- .. 유황 : 최대 350ppm

• 2000년부터 적용되는 가솔린엔진에 대한 주요 배출기준

- .. 올레핀 최대 18% .. 아로머틱(aromatics) 최대 42%
- .. 벤 젠 최대 1% .. 유황 최대 150ppm
- .. 산 소 최대 2.7% .. 메탄올 최대 3%
- .. 에탄올 최대 5% .. 이소 프로필 알코올 최대 10%
- .. 연 최대 0.005 g/l .. 테르트 부틸 알코올 최대 7%
- .. 기타산화물 최대 10%

• 신형 승용차에 대해 2000년부터 적용될 배출기준

[오염물질]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일산화탄소(CO)	2.3 g/km (2.2)	0.64 g/ km (1.0)
탄화수소(HC)	0.2 g/km	-
질산(NOx)	0.15 g/km	0.5 g/km
HC와 NOx의 합계배출량	- (0.5 g/km)	0.56 g/km (0.7)
기타 분진	-	0.05 g/km

* 주 : 괄호안은 현행 기준

• 디젤엔진 버스 및 로리의 배출기준

(단위 : g/kWh)

적용년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산	분진	메탄	비메탄
2000	2.1(5.45)	0.66(5.0)	5.0(0.16)	0.10(0.21)	(1.6)	(0.78)
2005	1.5(4.0)	0.46(3.5)	3.5(0.03)	0.02(1.10)		(0.55)

* 주 : 괄호밖은 정태검사, 괄호안은 동태검사 기준임

- 옥외장비 소음기준 강화

- . 크레인, 굴삭기, 압축기 같은 건설장비 및 잔디깎는 기계와 같은 정원기계류 등 19개의 옥외장비를 대상으로 소음기준 강화
- . 대상장비 : 밖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압축기, 해머, 덤퍼, 그레이더, 타워 크레인, 모빌크레인, 굴삭기, 적재기 등), 정원기계(잔디깎는 기계, 절단기 등), 도시에서의 작업장비(쓰레기 수거 자동차 등)
- . 덤퍼, 그레이더(땅 고르는 기계), 모빌크레인 등은 처음으로 소음한도가 설정된 반면, 압축기, 타워 크레인 및 콘크리트 절단기 같은 기계류는 기존의 소음배출한도가 3db- 6db로 강화
- . 최대 소음배출한도를 초과하는 장비는 EU역내 판매가 금지되며, 장비 제조업자는 역내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CE마크를 획득해야 함.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강화

- . 냉동시스템, 에어로솔, 용제 및 발화기에 주로 사용되는 CFCs, 할론, HCFCs, 그리고 농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메틸브롬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판매 금지 시기를 관련 국제협약(몬트리올 의정서) 보다 앞당기는 한편 규제량도 강화

- 절전 TV 및 비디오 기기만 판매

- . 유럽의 가전업체는 자율협정을 통해 2천년 1월 1일부터 자사의 TV 및 비디오 기기의 스탠바이 상태의 전력 소비량을 10와트 이내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함.

- . 동 협정에 참여한 16개 가전업체의 EU 시장점유율이 TV 및 VCR 분야 모두에서 65% 내외의 압도적인 비중이므로 사실상 동 기준이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업계의 이산화탄소 감축 약속

- . 유럽 자동차협회(ACEA)는 2008년까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수준보다 25% 더 감축키로(즉, 186g/km에서 140g/km로 줄이기로) 약속하고 우선 1단계로 2003년까지 165-170g/km로 줄일 방침임.
- . 업계의 자율협정 형식을 빌리고는 있으나, ACEA가 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강제규정을 입법화할 방침이므로 동 자율협정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임.
- . 아울러 ACEA의 자율협정은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업체도 동등한 배출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EU집행위 역시 이에 동조하여 일본 및 한국 업체에 대해 유사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음.
- . EU집행위는 '99년 3월의 EU 환경장관 이사회 개최 이전까지 일본과 한국 업체와의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

- 세제 업계의 환경친화적 행동 규범

- . 유럽 세제업체 또한 자율적으로 2002년까지 한번 세탁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5% 줄이고 세척제와 포장재의 소비량도 각각 10%, 비분해성 세제의 사용량도 10% 줄이기로 합의

○ 미국의 환경장벽

- 미국의 새우 수입금지

. 미국은 '96년 5월부터 바다거북이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조업하는 새우잡이 국가로부터의 새우 수입을 금지

. 규제대상국 :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30개국

* 미국은 규제대상국들에 의해 WTO에 피소되어 '98년 4월 WTO 판정에서 패소했으며, 동 판정에 불복하여 제시한 항소도 기각된 상태

- 정제된 가솔린 사용 의무

. 미국은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의거,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정제된 가솔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유업체의 전반적인 배기가스 발생비율을 '90년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구

. 미국 정유업체는 개별업체별 '90년 배기가스 배출수준을 기준으로 한 반면,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전체의 '90년 평균 배기가스 발생수준으로 낮추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업체보다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함.

* 동 조치는 WTO 출범이후 첫 번째 패널판정에서 수입산에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WTO 위배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 규정

. '93년 5월부터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경고라벨 미부착 제품은 미국내 유통이나 수입통관 금지

- . 부착 대상 :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저장 혹은 운송하는 용기, 또는 동 물질이 사용되는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

- 미국의 슈퍼펀드세

- .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11.1%의 세금 부과
- .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시에도 상응하는 세금 부과

- o 기타

- 일본에서는 야생동식물에 관한 법규에 의거, 야생동식물의 가죽 및 이로 만든 제품인 경우 수입허가를 득한 제품만 수입 가능
- 다수의 선진국들은 정부조달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을 우선구매토록 장려
- . 독일정부는 다수의 공공구매 및 기관조달 프로그램에 Blue Angel 마크 부착제품만을 고려토록 요구
- .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환경마크 획득제품 우선구매지침을 수립.시행 (* 일례로, 연방의회에서 사용중인 종이제품의 98%가 환경마크 획득 제품)

III.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대책

1. 정부의 대책

가. 공격적인 통상정책

-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의 통상외교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
- 양자간 협력을 통한 사전 수입규제 차단
 - 수입규제 및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해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양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는 등 사전에 수입규제를 예방하는 노력 필요
 - 정부간 상설협의회 활성화
 - . 경제협력위원회, 무역협의회 등과 같은 정부간 협력기구를 신규 설립하거나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성화시켜 상호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
 - * 참고 : 태국의 경우에는 정부부문 협력기구인 한.태 무역협의회가 '93년이래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불만 표시
 -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 .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필요
 - . 양자간 및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수입규제조치 등 무역장벽 회피 및 상대적인 불이익 제거 가능 (예; 멕시코의 수입관세인상 조치에서 협정체결국은 적용 제외)

- .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블록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경제블록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필요

* 참고 : 지금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은 153개로 대부분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90년대 들어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WTO 회원국이 1개 이상의 지역협정에 가입해 있음.

○ WTO 등 다자간 협상 적극 활용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다른 국가가 불공정하게 수입규제조치나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WTO나 OECD 등과 같은 다자간 협상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지난해 칼라 TV 및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규제조치를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와 같이, WTO 규범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면 WTO 제소를 통해서라도 부당한 무역 장벽을 철폐시키려는 노력 필요
- . 칼라 TV의 경우는 분쟁패널이 설치되기 전에 미국이 스스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였고,
- . 반도체 분쟁건은 우리나라의 주장을 인정하는 패널 보고서 (“덤핑 재발가능성이 있는 한, 미소 덤핑마진의 경우에도 반덤핑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 상무성 규정의 WTO 관련 규정 위배)가 발표됨으로써 우리측의 제소로 패널이 설치된 첫번째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
- 특히, 최근들어 세계각국이 수입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허가제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시행하는 사례도 빈발해질 것이므로

WTO 등 다자간 무역규범 및 다자간 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

- . 우리나라의 경우,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주로 피소국(지금까지 총 8건 피소)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제소건수를 늘리는 등의 공격적인 통상정책 필요

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중소기업들의 경우 수출규모에 비해 무역장벽을 극복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하여 아예 수출을 포기하고 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을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 필요
- 규격인증 획득 대행 서비스 등 기술장벽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 및 확충
- . 미국의 UL이나 FDA 규격 획득에는 건당 수천만원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경비 보조 및 기술지원 필요
- . 중소기업청의 “해외인증획득 지원협의회” 활동 관련, 인증획득 비용 지원대상 기업 확충 등
-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 . 각국 표준규격의 무역장벽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EU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규격 상호 인정협정 체결 필요
- 반덤핑 피소 중소기업체의 변호사 비용 지원 등

2. KOTRA의 대책

가. 해외정보 신속 전파

- 해외무역관을 통해 각국의 수입규제 또는 보호주의 움직임을 업계에 조기 전파하여 대비토록 하고, 업계로부터는 타국의 수입 규제 움직임을 수렴하여 외국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산업자원부에 설치된 "수입규제대책전담반"을 통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에 기여

나. 업계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 강화

-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사후대응(예, 반덤핑 조사 질의서 작성 등) 지원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반덤핑 피소시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반덤핑 조사질의서 작성 등 제반 대응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수출피해 축소 가능

3. 기업의 대책

가. 주요 수출국 기업과의 산업내 협력 강화

-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입규제조치를 취함.
-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중남미 등의 개도국들 모두 아시아산 수입급증을 우려하여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

- 주력산업을 앞세운 산업간교역(즉,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해당 산업군의 상품을 교환) 위주의 수출확대는 수입규제와 통상마찰을 초래
- 따라서,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각국의 수입규제를 극복하고 아시아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과의 산업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 동종산업내에서 교역국 상호간 차별성 있는 상품이나 가공단계별로(예; 부품과 완제품) 특화한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①교역국간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고, ②경쟁적인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국의 역보복이나 생산비용 상승이 우려되어 상대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하기 어려움.
- . 일례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하여 반도체칩을 생산,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한.미 간 산업내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음.
- 이밖에 선진 다국적 기업과의 하청계약,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현지 투자진출 등과 같은 산업내 협력 강화 필요

나. 틈새품목/시장 발굴로 수출상품/지역 편중구조 개선

-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철강, 반도체, 섬유류 등과 같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당하고 있는 실정
-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및 지역 구조가 특정 지역과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
- 일례로, 대미수출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철강 및 금속제품 등 일부품목이 72%를

차지하는 편향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일부품목에 편중된 물량위주의 수출은 미국내 관련산업을 자극하여 수입규제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해외에서의 수입규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증별, 연령별 및 계층별 목표시장의 다양화 및 시장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필요

- 즉, 틈새상품 개발과 틈새시장 개척이 중요

- 지리적인 면에서는 우리 총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동남아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남아, CIS, 유럽 틈새, 중남미 시장의 개척을 강화

- 상품 측면에서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들 이외에 디지털 TV, 산업용 전자 부품, 건설 중장비, 플랜트 등과 같은 대체상품을 개발, 육성

다. 국내기업간 협의기구 활성화

- 또한, 해외 주요시장에서의 반덤핑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업체간 수출과당경쟁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국내기업간 협의기구 활성화 등의 조치 필요

< 부 록 1 >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99년 1월 현재)

국 가	현 재	건수	구 분	품 목
미 국 (19)	규제중	15	A D	1.가단주철 筩이음쇠, 2.황동판, 3.컬러TV브라운관, 4.전자교환시스템, 5.니트로셀룰로스, 6.폴리에스터 필름, 7.스탠다드강관, 8.스텐레스용접강관, 9.스텐레스강筩이음쇠, 10.와이어로프, 11.메가DRAM, 12.유정용강관, 13.스텐레스선재
			AD/CVD	1.금속제취사도구, 2.철강판재(냉연/아연도금강판)
	조사중	4	A D	1.스텐레스강선, 2.합성고무
E U (11)	규제중	9	A D	1.컬러TV(16"이하), 2.글루탐산나트륨, 3.폴리에스터단섬유, 4.플로피디스크(3.5"), 5.컬러TV(17"이상), 6.전자렌지, 7.대형알미늄축전지, 8.스텐레스스틸패스너, 9.소형팩시밀리
	조사중	2	AD/CVD	1.스텐레스스틸와이어, 2.폴리에스터섬유사
캐나다 (6)	규제중	5	A D	1.탄소강관, 2.앨범, 3.유정용강관, 4.중후판, 5.아연도강판
	조사중	1		1.스텐레스스틸봉강
호 주 (3)	규제중	3	A D	1.발포성폴리스티렌, 2.유리장섬유 3.PS레진
뉴질랜드 (2)	규제중	2	A D	1.연산축전지, 2.연마용디스크
인 도 (6)	규제중	4	A D	1.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2.Acrylic Staple Fiber 3.Purified Terephthalic Acid 4.폴리스티렌
	조사중	2	A D	1. Rubber, 2.공업용 재봉바늘
남아공 (6)	규제중	2	A D	1.자동차타이어, 2.스텐레스 주방용품
	조사중	4	A D	1.아크릴담요, 2.카본블랙, 3.스텐레스 싱크대, 4.광케이블
이집트 (1)	조사중	1	A D	1.자동차타이어
터어키 (2)	규제중	1	A D	1.자동차 축전지
	조사중	1	A D	1.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아 시 아		7		
태 국	규제중	1	A D	1.H형강
인 니	조사중	1	A D	1.석도강판
말레이	규제중	2	A D	1.골심지, 2.PVC Floor Covering
중 국	조사중	1	A D	1.신문용지
대 만	규제중	2	A D	1.H형강, 2.선재
중 남 미		6		
아르헨	규제중	2	A D	1.Gas Lighter 2.Y- Shirts 3.전자렌지 4.세탁기용모터
콜롬비아	조사중	1	A D	1.타이어
베네수엘라	조사중	1	A D	1.일회용주사기
멕시코	규제중	1	A D	1. Polyester Staple Fiber
파나마	조사중	1	A D	1. 철근류
19개국	계	69		규제중 : 49 조사중 : 20

I. 반덤핑 규제 및 조사 현황

1. 미국 (규제중:15, 조사중:4)

품 목	제소일자	제 소 자	국내피제조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가단주철관 이음쇠	85.7.30	Pipe Fitting Committee	신한주철, 미진 금속	86.3월 12.48% 덤핑판정	현 25.59% 덤핑 99.1월 소멸재심
금속제 취사도구	86.1.21	Fair Trade Committee of the Cookware Manufacture's Ass'n	남일금속 등 27개사	86.11월 0.75- 31.23% 덤핑판정 (상계관세 0.232% 미소마진)	현 캠핑용제외 1.06- 2.95% 99.2월 소멸재심
황동판	86.3.30	Council of Copper & Brass Fabricators	풍산금속	86.11월 7.16% 덤핑판정	현 7.34% 덤핑 99.2월 소멸재심
컬러TV 브라운관	86.11.26	Int'l Ass'n of Macinists & Aerospace Workers 등 5개노조	삼성전관, LG 전자, 대우전자	87.11월 1.91% 덤핑판정, 우회 덤핑조사	현 0.12- 1.91% 99.3월 소멸재심
전자교환 시스템	88.12.28	AT&T	LG전자, 삼성 전자, 동양정밀	89.12월 13.4- 15.85% 덤핑판정	현 1.39- 2.86% 99.6월 소멸재심
니트로셀룰 로스	89.9.19	Hercules사	(주)미원	90.5월 66.3% 덤핑판정	현 0.36%(*선경) 99.6월 소멸재심
폴리에스터 필름	90.4.27	E.I.Dupont Hoechesh사 등 3개사	선경화학, 서통, 코오롱	91.4월 3.88- 5.38% 덤핑판정	현 6.83%(SKC) 99.7월 소멸재심
스탠다드 강관	91.7.24	CPTI 회원 9개사	현대강관 등 6개사	92.9월 4.91- 11.63% 덤핑판정	현 2.64% 99.5월 소멸재심
스텐레스 용접강관	91.11.18	미철강업계 및 노조	삼미금속 등 5개사	92.11월 2.55- 7.75% 덤핑판정	현 2.67%(세아) 99.7월 소멸재심
스텐레스강 관이음쇠	92.5.20	Markovitz Enterprise	아세아 벤드	92.12월 21.2% 덤핑판정	현 21.2%(아세아) 99.7월 소멸재심
와이어로프	92.4.9	미 와이어로프 및 특수 케이블 제조협회 7개사	고려제강 등 9개사	93.2월 1.51% 덤핑판정	현 0.04- 13.79% 99.1월 소멸재심
메가DRAM	92.4.22	Micron Technology	현대전자, LG 전자, 삼성전자	93.5월 0.74- 7.19% 덤핑판정	현 7.61- 12.64% 99.11월 소멸재심
				98.9월 제4차 연례 재심(최종판정) : 현대 3.95%, LG 9.28%	
철강판재	92.6.30	USX, LTV 등 12개사	포항제철, 연합 철강, 동국제강	93.6월 8.88- 24.95%, 2.69- 4.64%(상계)	현 0.39- 5.72% 99.9월 소멸재심
				98.9월 제4차 연례 재심(예비판정) : 동부 1.47%, 포철 0.02%, 연합 0.19%	
유정용강관	94.6.30	IPSCO 등 6개사	동부제강 등 5개사	96.6월 0- 12.17% 덤핑판정	현 현대강관 0%, 기타 12.17%
				98.9월 제2차 연례 재심(예비판정) : 세아 0.35%	

품 목	제소일자	제 소 자	국내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스텐레스 선재	97.7.30	북미특수강협회	포항제철, 삼미특수강, 동방	98.7월 3.18- 28.44% 덤핑확정	현 3.18- 28.44%
스텐레스 강선	98.3.27	AWPA, SSINA	고려제강 등 5개사	조사중	
스텐레스 열연후판	98.3.31	북미특수강협회 소속 4개사 및 관련노조	포항제철, 삼미특수강	조사중(반덤핑 및 상계관세)	98.9.2 상계관세 예비판정(0.69%)
합성고무	98.4.1	Aeripol Synpol 등 2개사	금호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조사중	98.10.29 반덤핑 예비판정(현대:118.88%, 금호 등:13.91%)
스텐레스 냉연강판	98.6.30	Allelehany Ludlum Corp. 등 7개사	포항제철, 인천제철 등 5개사	조사중	반덤핑/ 상계관세 98.12.17 반덤핑 예비판정(0% - 58.79%)

< 참고사항 >

- * 스텐레스 열연후판코일 : 98.10.27 반덤핑 예비판정, 99.1월 상계관세/반덤핑 최종판정
- * 폴리에스터 필름 : 98.9.30에 96.2의 제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수정결과에 대한 CIT 의 판정결과 발표(서통에 대한 덤핑마진을 11.62%로 확정)
- * 니트로셀룰로스 : 98.11.9 연례재심 최종판정(대상 2.1%)
- * 스텐레스 냉연강판 : 98.11.10에 상계관세 예비판정(포철 0.75%, 대양금속 0.58%, 기타 최고 29.23%)
- * 스텐레스 강선 : 98.11.13에 반덤핑 예비판정(0- 1.33%의 미소마진 판정, 최종판정시에도 미소마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반덤핑제소건 종결)
- * 와이어로프 : 98.12.8에 연례재심 예비판정(금호 0.25%, 광신 1.51%, 기타업체 13.79%)
- * 스탠다드 강관 : 98.12.23 연례재심 개시, 99.11.30에 연례재심 최종판정

2. EU (규제중:9, 조사중:2)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국내피제조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칼라TV (16"이하)	87.8 / 88.12	유럽 가전제품제조업자 협회(EACEM)	삼성전자, LG, 대우 등	90.4월 10.2- 19.6% 확정관세부과,	95.4월 재심 98.11월 재심
글루탐산 나트륨	88.3 / 88.6.6	European Council of Chemical Manufacturers Federation	미원, 제일제당 등	90.6.30 0.189Ecu/kg 확정(*가격인상약속) 96.1.20 0.129- 0.28 Ecu/kg 확정	97.7 재심 98.9 재심(반덤 핑 관세 지속 부과 결정)
폴리에스터 단섬유	90. / 90.11.21	Int'l Rayon & Synthetic Fibers Committee	선경인더스트리, 삼양사, 제일합 성 등	93.1.15 1.6- 4.8% 확정관세부과	97.10.23재심
3.5"플로피 디스크	92.4 92.9.18	유럽디스켓제조업자연 협회(DISKMA)	SKC, LG	94.9.10 8.1% 확정 관세부과	98.12.17에 재 심개시 공고
칼라TV (17"이상)	92.7 / 92.11.25	Society for Coherent Antidumping Norms in Germany(SCAN)	LG전자, 대우 전자, 삼성전자 등	95.3.27 13.4- 17.9% 확정관세부과	95.4월 재심 98.11월 재심
대형알루미늄 축전지	/ 93.3.10	Federation for Appropriate Remedial Anti-dumping(FARAD)	대우전자, 삼화 전기, 동화전자, 동성전자 등	94.6.18 70.6% 확정 관세부과	98.4.7 중간 재심
전자렌지	/ 93.12.18	유럽가전제품제조자 협회(ECED)	삼성, 대우, 현대, LG	95.12.22 3.3- 29.0% 확정관세부과	
스텐레스 파스너	/ 96.12.7	유럽파스너산업협회	파일볼트산업, 한 국 볼 트 산 업 등	98.2.17 24.0- 26.7% 확정관세부과	
팩시밀리	96.12.20 97.2.1	필립스	대우, 삼성, 닉 소 텔레콤 외	98.4.30 7.5- 25.1% 확정관세부과	
스텐레스 강선	/ 98.6.25		덕흥제선, 극동 선재 등 12개사	조사중	반덤핑/ 상계관 계
폴리에스터 섬유사	/ 98.8.21			조사중	반덤핑/ 상계관 세

<참고사항>

- * 칼라TV : 98.9.8에 EU집행위가 LG전자는 1.4%, 삼성전자는 1.8%의 미소덤핑판정을 내림에 따라, 덤핑관세철회 공식발표예정 (- - > 98.11.27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de minimis를 이유로 반덤핑관세 철회한 반면, 여타업체에 대해서는 15.1%의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기로 결정)
- * 글루탐산나트륨 : 98.9.29에 97.7월의 재심결과 발표(제일제당 10.5%, 기타업체 12.3%의 반덤핑관세 부과), 98.9.30부터 적용

3. 캐나다 (규제중:5, 조사중:1)

품 목	제소일자	제 소 자	국내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탄소강관	82.7.28	Ipsco Inc., Prudentail Steel 등 4개사	동국제강, 한국강관 등 13개사	84.6월 7 19% 덤핑판정	
자착식앨범, 앨범시트	84.7	Desmarais & Frere Ltd.	진성상역, 고려기업, 은진물산	85.4월 27.7% 덤핑확정	
유정용강관	85.7.26	IPSCO사	세아제강, 현대강관, 연합철강	86.3월 9.14% 덤핑판정	
중후판	93.10.	캐국세청 자체조사	동품목 수출업체 전체	94.4월 44.5% 덤핑확정	
아연도강관	93.11	Dofasco Inc, Stelco Inc.	동부제강, 포항도금 강관, 포철	94.6월 8.7% 18.1% 덤핑확정	
스텐레스 스틸봉	98.12.13 조사개시			조사중	

4. 호주 (규제중:3)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발포성 폴리스틸렌	92.1 92.2.19	BASF Australia, Chemplex Sales사	신호유화, 미원유화	92.10.16 0.5% - 30% 확정관세부과	97.11.3 규제연장 98.2.25 재심개시
유리장섬유	92. / 97.10.11	ACI Australia사	한국베트로텍스(주)	94.6.8 덤핑긍정 최종판정 (* 가격인상수락)	99.5.30 종료예정 (* 98.12.15 현재 조치연장 여부 검토 예정)
PS 레진	97.12.11	Huntsmann Chemical Co. Australia Pty. Ltd.	금호화학, 동부한농화학, 신호유화, 한국바스프, LG 화학 등	98.12.29 3%- 19% 확정관세 부과	

5. 뉴질랜드 (규제중:2)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연산축전지	91.4 / 91.9		Dokor Corp., Global & Yuasa Battery, Korea Storage Battery	91.12월 47- 48% 최종판정	94.6월 서울인하 (현재 12- 18% 적용)
연마용 디스크	95.1 / 95.4			95.10월 12- 16% 최종판정	

6. 태국 (규제중:1)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H-형강	/ 97.4	Sian Yamato Steel Co. Ltd.	인천제철, 강원산업	98.4.25 31.65- 44.70% 확정관세	

7. 인도네시아 (조사중:1)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Tin Plate	/ 98.3.24	PT. LATINUSA	삼성물산, 현대,쌍용, 대우,선경, 포스코	조사중	

8. 말레이시아 (규제중:2)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골심지(particle board)	/ 97.7.8	말련 펄프.제지 협회	경산제지, 대림제지	98.4.3 17.3- 35.4% 확정관세 부과	
PVC Floor Covering	/			96.1 69% 확정관세 부과	

9. 인도 (규제중:4, 조사중:2)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95.11.14/	Gusart APAR Polymer Mfg B.R.	금호석유화학	97.7.17 Rs. 8,316/MT 확정관세부과	
Acrylic Staple Fiber	96.하반기/	P a s u p a t i A c r y l i c , Consolidated Fibers	LG	97.10.24 Rs. 22.37/Kg 확정관세부과	
P u r i f i e d Terephthalic Acid	96.4 /	Bombay Dyeing, R e l i a n c e Industry	(주)선경, (주)삼정석유화학, 고합석유화학	98.4.28 Rs. 1,490/MT 확정관세부과	
폴리스티렌	97.10 / 98.1.6			98.11 22% 확정관세 부과	
Styrene Butadiene Rubber	97.하반기/ 98.2.15	Synthetics & Chemicals Ltd.		조사중	
공업용 재봉 바늘	/ 98.1			조사중	98.12 잠정조치

10. 중국 (조사중:1)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신문용지	/ 97.12.11	吉林造纸有限公司 등 9개업체	한솔제지, 대한제지, 세풍	98.7.10 잠정관세부과 (한솔:17.11%, 기타: 55.95%)	

11. 대만 (규제중:2)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H-형강	97.1.2, 98.2 제소	東和강철	-	98.8.8 31.46%로 인하 98.11.27 확정관세 부과	98.4.8- 8.7간 잠정 관세(54.81%)부과
Uncoated stress-relieved steel wire	/ 97.11.21	臺灣鋼線강남 同業公會	-	98.11.27 확정관세 부과	98.8.25 피해 긍정 판정

<참고사항>

* 98.11.27에 H형강 및 강선에 반덤핑관세 확정 : H형강은 31.46%, 강선은 5mm(25.93%), 7mm(33.72%), 9mm(42.38%)로 확정

12. 남아프리카 공화국 (규제중:2, 조사중:4)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자동차 타이어	/ 97.1.17	SATMC	금호/우성(무협의 한국타이어	98.7 확정관세 부과	98.4.3 잠정관세 부과 (58.4%)
스텐레스주방 용품	/ 97.11	SASSDA	모든 한국수출 업체(동원금속 제외)	98.10 확정관세 부과	98.5.5 잠정관세 부과(20- 30%)
아크릴담요	/ 98.4.8	T e x t i l e Federation	성민, 부민, 삼풍 등 13개 업체	조사중	98.12.18 잠정관세 부과(11.50란드/k g)
카본블랙	/ 98.8.21	Algorax Ltd.	거평화학, 금화 석유화학, LG 화학	조사중	
스텐레스 싱크	98.9 /	City Metal Products Ltd.	Togan, 대륙산업, 한스 Inc. M&B 트레이딩, 에넥스, 한일, 보르네오 가구 등 7개사	조사중	
광케이블	/ 98.9			조사중	

<참고사항>

* 아크릴담요 : '99.6.18일까지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13. 이집트 (조사중:1)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자동차타이어	98.9.2/ 98.9.15	이집트 타이어 제조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흥아, 효성	조사중 (조사기간 : 97.7.1- 98.6.30)	답변서 제출기한 을 10월중순에서 98.11.21로 연장

14. 터키 (규제중:1, 조사중:1)

품 목	제소/조사	제 소 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자동차축전지	/ 92.5			반덤핑관세 부과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 98.11			조사중	

15. 중남미(규제중:3, 조사중:3)

국 가	품 목	제소일	제소자	피제소업체	주요규제내용	진행상황
아르헨티나 (규제중:2)	Microwave Oven	93.6.11	BGH	대우,LG, 삼성	14- 40 ℓ :최저수입 가격 설정 대우:33.1- 68.71 LG:422.2- 80.95 삼성:17.35- 36.12	95.4.4 예비판정 96.9.3 최종판정 제재기간 : 5년 (2001년까지)
	세탁기용 모터	-	MORCHIO Y B E N I T E Z SAIC	-	최저수출가격설정 (FOB):US\$13/EA (96.9.3발효)	96.9.2 예비판정 96.11.26 최종판정
콜롬비아 (조사중:1)	타이어	98.7.22	Icollantas/ Goodyear de Colombia S.A.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우성타이어	조사중	
베네수엘라 (조사중:1)	일회용 주사기	97.11.13	Weplast	부광메디칼	공고일부터4개월 간(아직 미공고)	98.8.12 예비판정 (3.5%)
멕시코 (규제중:1)	Polyester S t a p l e Fiber	92.3.9	C e l a n e s e M e x i c a n a S.S. de C.V. 등 11개업체	삼양사, 대우, 삼성 물산 등	삼양사 3.74%, 대우 14.81%, 삼성물산 4.49%, 기타 32%	93.1.21 잠정판정 93.8.19 최종판정 일몰재심중
파나마 (조사중:1)	철근류	98.12			조사중	

<참고사항>

- * 콜롬비아 정부는 99년 1월의 예비판정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없이 조사만료기한인 99년 3월까지 계속 조사기로 결정. 향후 서류조사를 통해 수출가격, 국제가격, 품질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경우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 큼.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타이어 수출은 98년 11월말까지 약 700만불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파나마, 마이애미를 통한 우회수출이 많아서 콜롬비아 업체들이 이를 경계해 옴.

II. 기타 규제조치

○ 수량제한

- 섬유류(쌍무쿼타; 양자간 섬유협정) : 미국, 캐나다, EU, 노르웨이, 일본
- 금속제양식기(업계간 수출자율규제협정) : 영국, 독일
- 수산물(일방적 국별쿼타) : 일본
- 자동차(수입쿼타) : 아르헨티나
- 직물(수입쿼타) : 브라질

○ 관세쿼타

- 피혁 및 피혁신발 : 일본
- 자동차 : 브라질

○ 세이프가드

- 폴리에스터 원사 : 콜롬비아
- Carbon Black : 인도

< 부록 2>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목별 관세인상 내역

(단위 : %)

HS 코드	품명	중전 관세율	신규 관세율
852990	TV수상기용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852990.01,02		15	18.0
852990.03,05		0	3.0
852990.04, 06-99		10	13.0
540761.01,02	비텍스취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함유량이	15	18.0
540761.99	85/100 이상의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25	28.0
854060	기타 음극선관	10	13.0
540769.01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10	13.0
540769.99		15	18.0
847330	컴퓨터 부분품과 부속품	0	3.0
852090.01	기타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와 음성기록기	10	13.0
852090.02		0	3.0
852090.99		15	25.0
852290.01	음성재생기기용 및 영상재생기기용 부품	10	13.0
852290.02,03,07,99		15	18.0
852290.04,05,06,08,09,10,11,12		15	18.0
540752.01	염색한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25	28.0
854091.03	음극선관 부분품	15	18.0
854091.99		10	13.0
854011	텔레비전용 천연색 음극선관	15	18.0
730512.01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 철강제 파이프라인	15	18.0
730512.99		10	13.0
390330.01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	10	13.0
850431	용량 1KVA이하의 변압기	15	18.0
851650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20	30.0
847160.01	컴퓨터 입력장치	10	13.0
847160.02-99	컴퓨터 출력장치 (프린터)	20	23.0
701120.01	음극선관용 밀폐되지않은 유리제 외피	10	13.0
701120.02,99		15	18.0
701120.03,04		10	13.0
841510.01	윈도우타입 또는 월타입의 공기조절기	20	23.0
852313.01,02	오디오·비디오 녹음·녹화용 마그네틱 테이프	0	3.0

HS 코드	품명	중전 관세율	신규 관세율
852313.99		15	18.0
390319.01	비발포성 폴리스티렌	10	13.0
390319.02,99		15	18.0
721049.01	기타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5	18.0
721049.99		10	13.0
901380.01	기타 액정 디바이스 및 광학기기	15	18.0
901380.99		0	3.0
841810	냉장고, 냉동고	20	23.0
853400.01	인쇄회로	15	18.0
853400.99		10	13.0
853222	알루미늄 전해용 고정식 축전기	10	13.0
600192	인조섬유 파일 편물	20	23.0
551614	날염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15	18.0
720917	두께 0.5-1mm의 냉연코일	10	13.0
540742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염색 직물	15	18.0
720851	두께 10mm 초과 열연강판	10	13.0
401110	승용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20	23.0
850490	변압기.정류기.유도자 등의 부분품		
850490.01,02,04,05,07,08,99		10	20.0
850490.03		0	3.0
850490.06		15	18.0
847989	기타 기기류	0	3.0
847989.01,02	디스트리뷰터 등	0	3.0
847989.03,04,05,06,07,08,10,12,13,14,16,17,19,20-25		20	23.0
847989.09,15,18	차량 윈도우 쉴드 등	15	18.0
847989.11,99	건전지 제조 몰드용 기기 등	10	13.0
852540.01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	10	13.0
720916.01	두께 1-3mm 냉연 코일	10	13.0
381710.01,03	혼합 알킬 벤젠	0	3.0
381710.02		10	13.0
381710.99		15	18.0
848071.01,99	사출식.압출식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15	18.0
848071.02		10	13.0
846299.01,02,03	기계식 프레스	10	13.0
846299.04		20	23.0
846299.99		0	3.0
730890.01	기타 철강제 구조물 및 등 부분품	20	23.0

HS 코드	품	명	중전 관세율	신규 관세율
730890.02,99			15	18.0
854411.01	동제의 권선용 전선		15	18.0
390390.01,02,05	기타 스티렌 중합체		15	18.0
390390.03,04,99			10	13.0
600243.01	인조섬유제 경편직 직물류		20	23.0
845090	가정형.세탁소형 세탁기 부분품		10	13.0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재생용 기기		10	13.0
853321.01	용량 20W이하 고정식 저항기		10	13.0
900691.01	카메라용 부분품 및 부속품		15	18.0
900691.02,99			10	13.0
850519.99	기타 영구자석 및 자화영구자석물품		10	13.0
401120.01	버스용.화물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20	23.0
847990	847989 기기용 부분품		10	13.0
540754.01	날염한 기타 직물 (T.P.F.함유량이 85/100이상)		15	18.0
854099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용 부분품		10	13.0

(자료원 : 연방관보 '98.12.31, BANCOMEXT 관세율표)